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721
----------	-------

발의연월일 : 2025. 10. 27.

발 의 자 : 김선교 · 구자근 · 김위상
최은석 · 서천호 · 김상훈
최보운 · 정동만 · 김성원
윤상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2024년 말 전체 인구 대비 고령자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고령화 심화에 따라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가 약 124만 명에 달하는 등 국가의 효과적인 치매 관리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농촌지역은 보건소와 치매안심센터 등의 치매관리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고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전문 의료기관 수의 부족으로 인하여 치매 진단을 위하여는 장거리 이동이 불가피하므로 치매관리에 있어 도시와의 격차가 심각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치매관리에 관한 도시와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치매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5 신설).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5(농촌지역 치매관리에 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농촌지역 주민들의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간에 치매관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간에 치매관리 격차 해소에 관한 목표 및 단계별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농촌지역 치매관리를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2조의5(농촌지역 치매관리에 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농촌지역 주민들의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간에 치매관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u>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간에 치매관리 격차 해소에 관한 목표 및 단계별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u> <u>③ 그 밖에 농촌지역 치매관리를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